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B3788

2.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이자산운용㈜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9년 6월 17일

5.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6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15년 6월 8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개방형 집합 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5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2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9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5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차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 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 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 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 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 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 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19.06.17)

< 요 약 정 보 >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B3788)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6 3 매우 매우 다소 보통 낮은 낮은 높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3왁아나는	선물 인성하거나	그 승권의 가지들 모증 또
	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시타의 개반형 지하투자기구리서 충려반생인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병견된 수 이수니다.						
_	TI TI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자 의사항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 수 있습니다.			선 구시달러시글 표정어달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싱	·기재되 트자저랴	에 따르 트	자모저 [또느 선과모표느 바	디시 신혀되다느 보장은 없
		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_^ P E C C T C T S C W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힙				•	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
		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	항은 투자설명서 '	투자결정시	l 유의사	항 안내'참조	
지하트기	기구 특징	중국본토 IPO에 참여를 주	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공모	혼합형 7	집합투자기구에 분신	난 투자하여 안정적인 채권
접접구시	717 98	수익과 주가상승 성과에 따	른 자본차익, IPO침	함여 성과에	따른 이	익 추구	
는 는	른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중도	E환매가능),	, 종류형		
집합투	투자업자	하이자산운용㈜ (02-727-27	00) [해외위탁집	합투자업지	: 보세리	ㅏ 인터내셔널(Boser	a International)]
모집(핀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	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효력	발생일	2019년 6월 25일		존속 :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	탁계약기간 없음
판미	ዘ회사	집합투자업자(www.hi-am.co	m) 및 한국금융투	-자협회(ww	/w.kofia.o	r.kr) 인터넷 홈페이	지 참조
종류	(Class)	А	С			C-E	S
가입	입자격	선취수수료부과,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	펀드온라인코리아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	수수료		18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판매	0.4	0.9			0.45	0.15
	운용 등		운용보수 0.72	2 / 신탁보=	수 0.05/	사무관리 0.02	
보수 (연, %)	기타	0.2041	0.2109			0.2060	-
	왕수병	1.3941	1.9009			1.4460	0.94
	합성총보수·비용	1.8941	2.4009			1.9460	1.44
		· 종류 A-E, C-F, C-I, C-I2, C	C-W, C-G 등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투지	·설명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매3개월 후	급으로 지	급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	영상적, 반복	루 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 주	석사항	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	하며, 회	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
		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구에 두사한 비율을 안분	·안 끠두사 십합투	사기구의 년	모수와 기	타비용을 합한 종역	백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	되, 피투자집합 특	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약 0.5%)를 포함		
	하여 추정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직적	하여 추정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		
	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시(오후 5시) 이전 : 제3영업일	환매 방법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8영업일 지급	
"" 0"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L-11 0 E	・17시 경과 후 : 제5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직전일 투	자신탁 자산총약	백 - 부채총액) /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기준가	기증가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7,671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전	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된	판매회사, 한국금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중국본토 IPO에 참여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공모 혼합형 집합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채권수익과 주가상승 성과에 따른 자본차익, IPO참여 성과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 기구(재간접형)입니다.

나. 상세 운용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피투자집합투자기구)은 0~95% 이하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중국내 설정된 공모 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공모주 투자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IPO자격 확보를 위하여 중국 일반주식에 10% 미만으로 투자하며, 공모주 청약외 기간에는 채권, RP 등으로 운용합니다.
-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시 WIND[上海万得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상해완득신식기술주식유한공사) 중국내 주식, 증권, 펀드 정보제공 기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 분석과 펀드 투자스타일 분석 등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후 피투자집합기구의 선택과 투자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환위험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에 대해서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환위험 제거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위안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2019.5.31현재)		
성명	년생	소속 부서	직위	운용중인 다른	다른 운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구시		집합투자기구수	자산규모	
	해외투자			7개	916억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3.7년)
박성구	1971	'1 팀장	0 1 1 1 102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4.7년)	
	운용실			-	-	하이자산운용 상해사무소장(3.2년)
						현 하이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실('14.03~)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8.06.18 ~ 19.06.17	17.06.18 ~ 18.06.17	16.06.18 ~ 17.06.17	15.06.18 ~ 16.06.17	
종류 A	-4.20	7.47	-0.96	-4.7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종류 A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
위험	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중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내 불
	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
재간접	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
투자 위험	가된 가격입니다.
1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에서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때문에 해당 투자 대상 지역의 정치적, 법적
	,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해외집합투자증권 중에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증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시장
국가위험	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 국가 정책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
	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여러 국
	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국IPO	중국시장의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런 중국
투자위험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변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 펀드가 투자하는 중국내 집
	합투자기구 역시 운용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향후 수익률 및 펀드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보세라 인터내셔널(Bosera International)의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내 집합투자기구 등에
RQFII를 통한	투자합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와 관련된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
중국본토 투자	한을 받을 수 있으며, RQFII 제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국당국의
위험	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본토 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환매 및 송금제한 등 수익자에게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승인 받은 한도(Quota)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중국본토 투자	이 투자신탁은 중국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



자산 관련 과	국 관련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 및 RQFII를 통한 중국
세규정 위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일부 유가증권 자산 매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
	며,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세당국의 이러한 결정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설정일 현재 중국본토 주식투자에
	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과세에 대비한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해당
	과세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ᆔᇀᅱᅱᅕ	이 투자신탁은 중국내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중 과거 안정적이고 수익률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선별하여 투자할
피투자집합투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가진 피
자기구 투자비	투자집합투자기구에 일시적 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
중 변동위험	략의 효과적인 구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중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국내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본토채권 매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이외에 중국내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익	중국채권 투자시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세 당국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정책, 세율,
과세위험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 과세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중국과세당국
	이 해당 과세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
	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
	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
환율변동위험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
	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혜
	지를 실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신탁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
해지 위험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공모주 투자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4.06%
-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① 투자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내부 및 외부의 가용한 리서치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 IPO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편입대상 중국 IPO 혼합형 펀드는 Due Diligence를 위해 해당 운용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담당 매니저와 투자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투자 후에도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규모, IPO 투자성과, IPO 참여의 적극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하여 운용전략을 점검하고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할 것입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형 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에 대하여 80% ± 20% 수준을 목표로 환위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 (2)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 ※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 \cdot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i-am.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i-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B3788
А	B3789
A-E	B3825
С	B3790
C-E	B3791
C-F	B3792
C-I	B3793
C-I2	B4256
C-W	B3794
S	B3795
C-G	BP31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최초설정시)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15년 6월 8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

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h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B3788
А	B3789
A-E	B3825
С	B3790
C-E	B3791
C-F	B3792
C-I	B3793
C-I2	B4256
C-W	B3794
S	B3795
C-G	BP3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5-06-08	최초 설정
2015-06-11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정정
	신탁계약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06-16	-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운용 및 투자제한, 금전차입 등의 제한,
	공시 및 보고서)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2010-07-02	- 위험등급 변경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17-04-29	신탁계약 변경(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해외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변경 : Conrad Cheng → Yang Tao
2018-04-1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공시)
	하이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최직근 결산일
2018-06-21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투자위험등급 변경 : 2등급(높은 위험) → 5등급(낮은 위험)
2019-06-25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의무해지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하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11, 12층)
	02-727-27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 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회사명	보세라 인터내셔널 (Bosera International)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
업무위탁범위	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실구제작업제	주문업무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 "	· "
	- 본사 : 홍콩
	- 임직원 : 38명
	- 모회사 : Bosera Asset Management Co., Ltd.
주요사항	- 수탁고 : USD 4.04 billion (약 4.5조원) (2018.12월말기준)
	- 2010년 3월 중국 심천에 소재한 "Bosera Asset Management Co., Ltd."의 자회
	사로 홍콩에 설립
	- 뮤추얼펀드, 연금 포트폴리오, 일임펀드 등을 운용
주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변	경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 합니다.

5. 책임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소속	직위	운용현황(2019.5.31현재)		
성명 년·	년생	모득 부서		운용중인 다른	다른 운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구시		집합투자기구수	자산규모	
	1971	971 **	팀장	77	916억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3.7년)
박성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하이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4.7년)
						하이자산운용 상해사무소장(3.2년)
				-	-	현 하이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실('14.03~)

- 주1) 상기인은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 입니다.
-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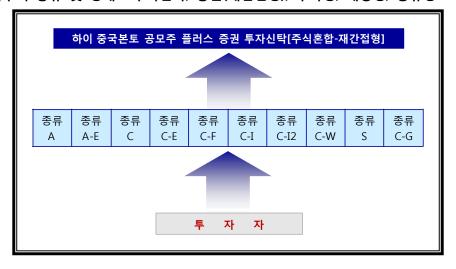
책임투자운용인력	운용 기간
	해당사항 없음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Yang Tao
	- 前 CCB(China Construction Bank), Analyst
	- 前 UBS Investment Bank, Analyst
주요경력 및 이력	- 前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Sector Portfolio Manager
	- 前 CLSA/CITIC Securities Int'l AM Division, Portfolio Manager
	- 現 Bosera Asset Management , Portfolio Manager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А	2015-06-08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제한없음
A-E	2015-06-08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С	2015-06-08	제한없음
C-E	2015-06-08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수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
C-F		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C-F	-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
		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C-I	-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C-I2	-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 또는 특정금전신탁인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S	-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
		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
C-G	-	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2) 보수 및 수수료 차이

	수수료			보수(%)				
종류	선취판매 (납입금액 기준)	후취판매 (환매금액 기준)	환매 (이익금 기준)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사무 관리 회사	
А	1.0% 이내				0.40			
A-E	0.5% 이내		10	19001 1111		0.20		
С			180일 미만 : 이익금의	0.72	0.90	0.05	0.02	
C-E		-	70%	0.72	0.45	0.03	0.02	
C-F	-		7078		0.03			
C-I					0.40			



C-I2			0.10	
C-W			0.00	
S	0.15% 이내		0.15	
C-G	-		0.63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됩니다.
- 주2)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u>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u>됩니다.
- 주3)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
(I)	겁입구시당선	30%0[8	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
2	주식	50%미만	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u>식</u>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
			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권관련사채권,
3	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3	게 건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등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5)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 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차입		②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	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11)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에의 예치
12	신탁업자 고유재신	<u></u> 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3.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대상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대상 ⑥부터 ⑨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에서 정하는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	②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계산은투자하는 날을기준으로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받는 판매수수료및 판매보수와이투자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법령에 따라외국에서투자매매업 또는투자중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를포함한다)가받는판매수수료및 판매보수의합계가법시행령제77조제4항에서정한한도를초과하여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가목 및 나목 의 경우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경우]	

②의2 : ②의 집합투자증권운용 투자제한 중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②의4까지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2. 「금융투자업규정」제4-52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②의4까지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 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②의3: ②의 집합투자증권운용 투자제한 중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의4: ②의 집합투자증권운용 투자제한 중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 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기 중단에 무지를 가 쓰기. - 가. 국채증권,「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	
	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	
	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	
	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	
	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	
	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	
	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	
	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	
	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	
	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④ 동일법인 발행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지분증권 투자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파생상품 투자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100 <u>6</u>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부터 1개월간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함)의	
		=

i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 310d \$ 111.71	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	
⑨ 계열회사가 바레힘 조기	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발행한 증권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 대	
	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제한 ②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투자제한 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제한 사항

	구 분	투자제한의 내용
1	자기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
의 취득제한		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수익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는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
		여야 한다.
		- 소각
		-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
	한	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
		이 곤란한 때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가. 투자대상'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자산운용의 기본 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중국본토 IPO에 참여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공모 혼합형 집합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채권수익과 주가 상승성과에 따른 자본차익, IPO참여성과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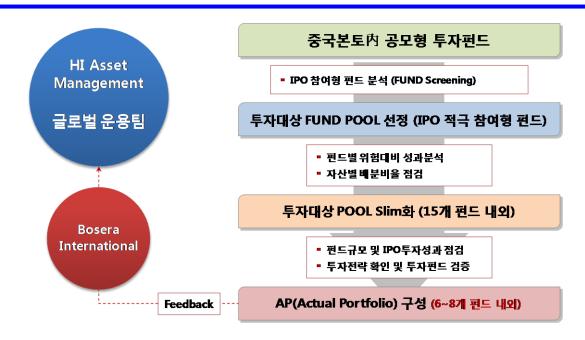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 업자인 "보세라 인터내셔널(Bosera International)"이 담당합니다. 향후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 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합니다.

(2) 상세운용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피투자집합투자기구)은 0~95% 이하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중국내 설정된 공모 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공모주 투자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IPO자격 확보를 위하여 중국 일반주식에 10% 미만으로 투자하며, 공모주 청약외 기간에는 채권, RP 등으로 운용합니다.
-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시 WIND[上海万得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상해완득신식기술주식유한공사) 중국내 주식, 증권, 펀드 정보제공 기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 분석과 펀드 투자스타일 분석 등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후 피투자집합기구의 선택과 투자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량적 분석 : 애널리스트 분석종목으로 향후 이익추정이 가능한 종목,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내 재가치 우수 종목 등

※ 정성적 분석 : 기업방문 및 세미나를 통한 펀더멘탈 분석 등



④ 중국 IPO 시장

- 온라인 청약: 개인투자자 위주, 추첨식

- 오프라인 청약: 기관투자자 위주(기관투자자: A, B, C 3그룹으로 기관분류)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참여자격	사회보장기금, <mark>중국내 공모펀드</mark>	기업연금, 보험	기타 일반(QFII, RQFII 등)

주1) 배정률: C그룹은 B그룹보다 높을 수 없으며, B그룹은 A그룹보다 높을수 없음

(3) 위험관리전략

- ① 투자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내부 및 외부의 가용한 리서치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 IPO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편입대상 중국 IPO 혼합형 펀드는 Due Diligence를 위해 해당 운용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담당 매니저와 투자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② 투자 후에도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규모, IPO 투자성과, IPO 참여의 적극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하여 운용전략을 점검하고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할 것 입니다.

(4) 환위험 관리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형 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사용하여 환위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에 대해서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환위험 제거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위안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 ③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나, 해당국가의 급격한 환율변동 이 예상되는 등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할 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통화에 대하여 환혜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 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를 실 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 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 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 니다.

(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현황

(2019. 5월 31일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Huann AnXiang Fund	집합투자업자	HuaAn Fund Management Co., Ltd
	개요	중국내 공모 혼합형 펀드로서 자산 다수를 우량주 및 채권에 투자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상해거래소와 심천거
		래소에서 발행되는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확보는 투
		자전략을 추구함. 자산규모는 11.7억 위안 수준
	집합투자업자	HuaAn Fund Management Co., Ltd
Huann New Active Fund		중국내 공모 혼합형 펀드로서 자산의 다수를 우량주 및 채권에 투
	711.0	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상해거래소와 심천
	개요	거래소에서 발행되는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확보는
		투자전략을 추구함. 자산규모는 3.0억 위안 수준

주1) 운용현황 및 시장상황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투자국가(중국) 현황

① 일반적 개요



GDP	US\$ 13.4조 (2018년,IMF기준)
1인당 GDP	US\$ 9,633 (2018년,IMF기준)
인구	14.2억명 (2018년, UN추정)
면적	960백만 km2 (세계4위)
환율	\$=6.90위안('19년05월31일)
정부형태	노농연맹 기초 인민민주주의 정부
산업구조(주력산업)	은행, 기계설비, 에너지, 광업

② 경제 현황과 전망

중국경제는 대외변수의 불확실성과 대내적인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6.5%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향후 외형적



성장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소득분배 개선, 지역격차 축소, 사업구조 조정등 질적인 개 선에 중점을 둘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축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 로 전환되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1)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 : 이 투자신탁은 중국내 IPO에의 참여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 드로서 펀드의 특성상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투자전 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중국 공모주 투자를 주된 투자전략으로하는 공모 혼합형 집합투자증권(피투자집합투자기 구)에 주로 투자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 을 추구하고, 주식 및 IPO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 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중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이 외국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한 채권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기업의 고유 위험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 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위험	신용등급은 개인이나 회사의 과거신용과 금융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증권(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측정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은 산정방식과 기준 등이 국제 기준과 상이하므로 국제 신용등급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발행자의 대부분이 우량등급의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기에 신용지표로서의 신뢰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용등급이더라도 회사 주주 배경, 정치적 요인 등에 따라 실제 신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
증권차입	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
위험	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 만
	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환매조건부채권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매도 및 운용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대한 위험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
	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
	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
및 RP매입	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및 NF메립 위험	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
기업	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
	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
	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단기대출(콜론) 및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 위험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
	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
	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에서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때문에 해당 투자 대상 지역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중	
투자대상 국가위험	에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증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 국가 정책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의 증권시장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IPO투자위험	중국시장의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런 중국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변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 펀드가 투자하는 중국내 집합투자기구 역시 운용 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향후 수익률 및 펀드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위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집합투자기구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투자된 집합투자증권의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 순자산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RQFII를 통한 중국본토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보세라 인터내셔널(Bosera International)의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내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와 관련된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RQFII 제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국 당국의 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본토 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환매 및 송금제한 등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승인 받은 한도(Quota)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중국본토 투자자산 관련 과세규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국 관련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일부 유가증권 자산 매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세당국의 이러한 결정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설정일 현재 중국본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과세에 대비한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해당 과세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 구 투자비중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내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중 과거 안정적이고 수익률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선별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가진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일시적 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효과적인 구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토채권 매매차익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중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국내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이외에 중국내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채권 투자시 매매차 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세 당국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 과세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해당 과세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외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혜지를 실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신탁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금 송금 불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내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에 이자 및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은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회수 연기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송금 및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서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송금관련 규정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환매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매대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대금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에 외국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은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수 익자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국본토주식 등의 유가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	ETIのおの ろのillの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
	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
환매대금	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
변동위험	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
ᆏᆮᄀᄆᅁᇶ	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펀드규모위험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ᅔᄓᆘᄸᄀ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환매연기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또는 제하이하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
제한위험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 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 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 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에기 전기를 두 쓰다더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
	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지 위험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
	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
대량환매	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
위험	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
2	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
고저기에 사저이치	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
공정가액 산정위험	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
	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권리행사 위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
	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
	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거래중지 위험	의 물가피한 자유도 매매거대가 중시될 수 있고 합병, 문일 등과 같은 기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에부어지는 과정에서 해령증권의 거대가 중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
	레이 이번도 의 사이에서 이러가 이까지만 ㅜㅜ 거네가 세계되어 되지 않기가 어

	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
	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
	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가격 산정오류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
위험	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법률, 조세 및 규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자산 대부분이 투자되는 중
등 제도적 위험	국지역의 조세 및 규제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01 01 EL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위탁	경우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
집합투자업자	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방법 및 운용전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
변경에 따른 위험	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세스를 운영합
운용프로세스 위험	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
	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
	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
	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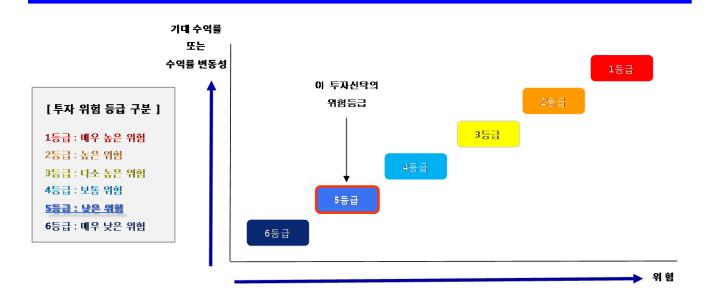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공모주 투자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주식 및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4.06%



[위험등급 기준표(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제한없음			
A-E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С	제한없음			
C-E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C-F	수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C-I2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 또는 특정금전신탁인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S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 C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
C-G	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 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7 8		지급비율						파 그 나가			
구분	Α	A-E	С	C-E	C-F	C-I	C-I2	C-W	S	C-G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 시

주1) 이익금 :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수익 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 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



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상기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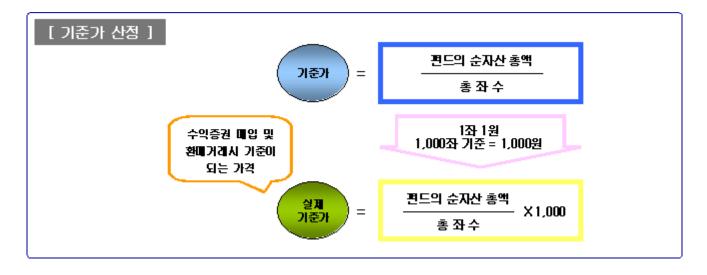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					
	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					
산정방법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					
	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교도가 파메니스이 차이크 이상이 교도 조르가 기조기건이 사이하 스 이스니다.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공시장소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네이지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
집합투자증권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비상장주식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구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식과 구주식의 배당기산일이 같지 않은 경우
시가형성 전의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상장주식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
상장채권	레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고 는 기고 비상장채권(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은 2개 이상의 채권평
비상장채권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
및 채무증권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	세면정기되어가 세요한 기념을 기포도 한 기념
부도채권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78	지급비율(%)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기타비용				
Α	납입금액의 1.0%이내			ᄉᅁᄌᆡᇬ				
A-E	납입금액의 0.5%이내		180일 미만	수익증권의				
С		-	: 이익금의 70%	현물발행 비 ㅇ ㄷ				
C-E	-			용 등				

C-F				
C-I				
C-I2				
C-W				
C		3년미만 환매시		
S		: 환매금액의 0.15%이내		
C-G		-		
부과기준	매입 시	-	환매 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종류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사무 관리 회사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비율	합성 총보수 및 비용비율	증권 거래 비용		
А	0.72	0.40	0.05	0.02	0.2041	1.3941	1.8941	0.0845		
A-E	0.72	0.20	0.05	0.02	0.2012	1.1912	1.6912	0.0824		
С	0.72	0.90	0.05	0.02	0.2109	1.9009	2.4009	0.0832		
C-E	0.72	0.45	0.05	0.02	0.2060	1.4460	1.9460	0.0828		
C-F	0.72	0.03	0.05	0.02	-	0.82	1.32	1		
C-I	0.72	0.40	0.05	0.02	-	1.19	1.69	-		
C-I2	0.72	0.10	0.05	0.02	-	0.89	1.39	-		
C-W	0.72	0.00	0.05	0.02	-	0.79	1.29	-		
S	0.72	0.15	0.05	0.02	-	0.94	1.44	-		
C-G	0.72	0.63	0.05	0.02	-	1.42	1.92	-		
지급시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매 3개월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6-08~2019-06-07]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약 0.5%)를 포함하여 추정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6-08~2019-06-07]
- 주5)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1,000원)

구분	가입 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А	99	293	711	1,171	2,540
A-E	49	223	596	1,007	2,230
С	-	246	775	1,359	3,095
C-E	-	199	628	1,102	2,508
C-F	-	135	426	747	1,701
C-I	-	173	546	957	2,178
C-I2	-	142	449	787	1,792
C-W	-	132	416	730	1,663
S	-	147	465	815	1,856
C-G	-	196	620	1,087	2,47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종류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될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 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으며,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 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2016년 6월 16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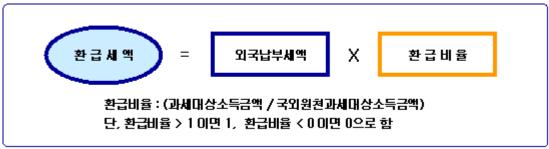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

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2018.06.08 - 2019.06.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기(2017.06.08 - 2018.06.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2016.06.08 - 2017.06.07)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요약 대차대조표									
÷l D	제 4기	제 3기	제 2기							
항목	(2019.06.07)	(2018.06.07)	(2017.06.07)							
운용자산	8,259,750,967	11,634,940,068	35,887,646,985							
증권	6,487,273,052	9,152,580,867	30,518,002,459							
파생상품	-1,465,630	2,161,722	-63,094,23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773,943,545	2,480,197,479	5,432,738,7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5,317,835	77,152,059	2,235,764,888							
자산총계	8,285,068,802	11,712,092,127	38,123,411,87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9,451,591	187,635,654	4,605,562,609							
부채총계	59,451,591	187,635,654	4,605,562,609							
원본	8,647,917,864	11,401,382,732	35,690,741,309							
수익조정금	-61,618,101	-1,351,576,419	844,231,847							
이익잉여금	-360,682,552	1,474,650,160	-3,017,123,892							
자본총계	8,225,617,211	11,524,456,473	33,517,849,264							
	요약 손익계	 산서								
	제 4기	제 3기	제 2기							
항목	(2018.06.08 -	(2017.06.08 -	(2016.06.08 -							
	2019.06.07)	2018.06.07)	2017.06.07)							
운용수익	-391,463,143	2,456,944,865	-322,224,084							
이자수익	12,179,710	14,530,907	27,982,036							
배당수익	2,517,020	489,417,050	21,858,006							
매매/평가차익(손)	-406,159,873	1,952,996,908	-372,064,126							



기타 수익	6,764	755,617	0
운용비용	129,880,247	306,547,843	840,154,362
관련회사 보수	128,610,247	303,777,843	838,454,362
매매수수료	1,270,000	2,770,000	1,700,000
기타 비용	43,172,812	46,508,721	63,638,868
당기순이익	-564,509,438	2,104,643,918	-1,226,017,314
매매회전율(%)	594.63	223.49	761.99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3)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4기(2019.06.07) 금 액		제3기(20		제2기(2017.06.07) 금 액		
자 산	<u> </u>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13,767,945	1,773,943,545	2,336,375,479	2,480,197,479	4,974,971,756	5,432,738,75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60,175,600		143,822,000		457,767,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매입어음 대출금 유가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78,883,900	6,487,273,052	833,688,650	9,152,580,867	1,051,435,500	30,518,002,459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6,386,345,106 22,044,046 -1,465,630	-1,465,630	8,336,755,817 -17,863,600 2,161,722	2,161,722	29,448,862,845 17,704,114 -63,094,230	-63,094,230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10,688,711 331,040 14,620 14,283,464	25,317,835	3,520,000 227,737 73,404,322	77,152,059	306,181 2,235,458,707	2,235,764,888	
자 산 총 계		8,285,068,802		11,712,092,127		38,123,411,873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대조건부채권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1,740,000 28,508,470 29,203,121	59,451,591	146,561,826 41,073,828	187,635,654	15,600,000 4,463,238,945 126,723,664	4,605,562,609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59,451,591		187,635,654		4,605,562,609	
자 본 1. 원 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발행좌수 당기: 8,647,917,864 좌 전기: 11,401,382,732 좌	8,647,917,864 -422,300,653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360,682,552 -61,618,101	11,401,382,732 123,073,741	1,474,650,160 -1,351,576,419	35,690,741,309 -2,172,892,045	-3,017,123,892 844,231,847	
전전기: 35,690,741,309 좌) (기준가격 당기: 1,004.31 원 전기: 1,042.14 원 전전기: 965.99 원) 자 본 총 계		8,225,617,211 8,285,068,802		11,524,456,473		33,517,849,264 38,123,411,873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4기(2018.06.08-2019.06.07)		제3기(2017.06.	08-2018.06.07)	제2기(2016.06.	08-2017.06.0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4,703,494		504,703,574		49,840,042
1. 이 자 수 익	12,179,710		14,530,907		27,982,036	
2. 배당금수익	2,517,020		489,417,050		21,858,006	
3. 수수료수익	6,764		755,617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79,417,114		4,467,734,307		6,586,720,027
1. 지분증권매매차익	185,454,014		1,131,618,446		503,308,61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337,830,000		982,264,000		671,788,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7,234,392				606,046,252	
5. 외환거래/평가차익	249,194,701		1,452,119,993		3,839,378,212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99,704,007		901,731,868		966,198,95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86,846,987		2,517,507,399		6,960,484,153
1. 지분증권매매차손	123,841,024		320,664,137		121,590,65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525,190,000		874,454,000		766,350,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205,656,134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489,540,338		942,288,232		5,963,844,532	
6. 대손상각비	,		,,		0,000,000,000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48,275,625		174,444,896		108,698,966	
3. 7197141C2	110,273,023		17 1,11 1,030		100,030,300	
문 용 비 용		171,783,059		350,286,564		902,093,230
1. 운용수수료	67,721,375	,,	157,723,603	2007=20722	432,118,002	552,555,255
2. 판매수수료	56,186,507		135,101,672		376,328,661	
3. 수탁수수료	4,702,365		10,952,568		30,007,699	
4. 투자자문수수료	1,7 02,303		10,332,300		30,007,033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3,172,812		46,508,721		63,638,868	
0. 714418	43,172,012		40,300,721		03,030,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64,509,438		2,104,643,918		-1,226,017,31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65276919		0.184595498		-0.03435113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초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잔고
종류	기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좌 수 (출자지 분수)	금액	해지좌 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8.06.08 - 2019.06.07	57	57	1	1	16	15	42	40
Α	2017.06.08 - 2018.06.07	173	163	6	6	123	123	57	58
	2016.06.08 - 2017.06.07	438	417	0	0	265	249	173	163
	2018.06.08 - 2019.06.07	7	7	0	0	1	1	7	6
A-E	2017.06.08 - 2018.06.07	19	18	0	0	12	12	7	7
	2016.06.08 - 2017.06.07	48	45	0	0	29	27	19	18
С	2018.06.08 - 2019.06.07	50	50	0	0	12	12	38	36

	2017.06.08 - 2018.06.07	160	150	1	2	112	110	50	50
	2016.06.08 - 2017.06.07	479	454	0	0	319	297	160	150
	2018.06.08 - 2019.06.07	1	1	0	0	0	0	1	1
C-E	2017.06.08 - 2018.06.07	5	5	0	0	4	4	1	1
	2016.06.08 - 2017.06.07	14	13	0	0	9	8	5	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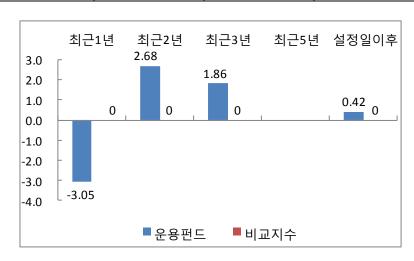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구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6.18	17.06.18	16.06.18		15.06.08
	~ 19.06.17	~ 19.06.17	~ 19.06.17		~ 19.06.17
운용펀드	-3.05	2.68	1.86		0.4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А	-4.20	1.47	0.65		-0.7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A-E	-4.01	1.67	0.85		-0.5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С	-4.68	0.96	0.15		-1.26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C-E	-4.24	1.42	0.60		-0.8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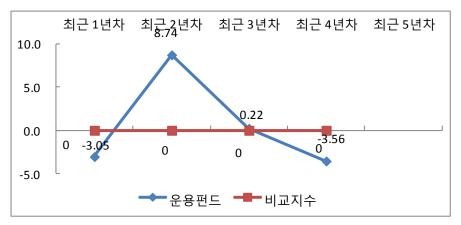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구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8.06.18	17.06.18	16.06.18	15.06.18	
	~ 19.06.17	~ 18.06.17	~ 17.06.17	~ 16.06.17	
운용펀드	-3.05	8.74	0.22	-3.56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А	-4.20	7.47	-0.96	-4.7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A-E	-4.01	7.68	-0.76	-4.5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С	-4.68	6.94	-1.45	-5.19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C-E	-4.24	7.42	-1.01	-4.76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6)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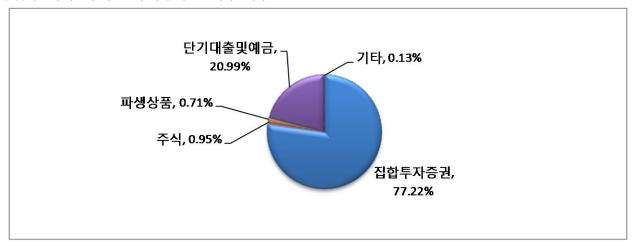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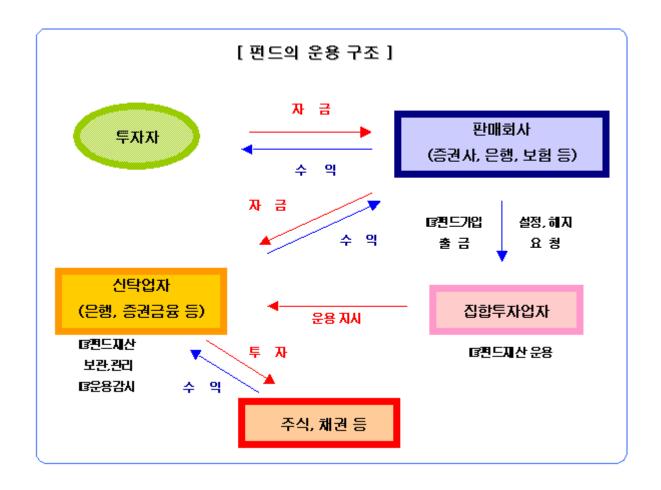
(펀드분기말 2019. 6.7 기준 / 억원, %)

	증권			파생상품			특별	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이쉬	1	0	0	38	1	0	0	0	0	12	0	52
원화	(1.52)	(0.00)	(0.00)	(73.82)	(1.16)	(0.00)	(0.00)	(0.00)	(0.00)	(23.30)	(0.21)	(63.00)
조그이아칭	0	0	0	25	0	0	0	0	0	5	0	31
중국위안화	(0.00)	(0.00)	(0.00)	(83.37)	(0.00)	(0.00)	(0.00)	(0.00)	(0.00)	(16.63)	(0.00)	(37.00)
미그다기성	0	0	0	0	0	0	0	0	0	0	0	0
미국달러화	(0.00)	(0.00)	(0.00)	(0.00)	(0.00)	-(10.12)	(0.00)	(0.00)	(0.00)	(110.12)	(0.00)	(0.00)
동니	1	0	0	64	1	0	0	0	0	17	0	83
합계	(0.95)	(0.00)	(0.00)	(77.22)	(0.73)	-(0.02)	(0.00)	(0.00)	(0.00)	(20.99)	(0.13)	(100.00)

주1)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11, 12층)
02-727-2700
www.hi-am.com
1989. 10 제일투자신탁 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 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0. 5 투자자문업 인가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08. 9. 18 하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344억
하이투자증권㈜ 92.42%, ㈜현대미포조선 7.57%, 기타 0.01%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지	배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8.12.31	2017.12.31	계정과목	2018.1.1 ~	2017.1.1 ~

				2018.12.31	2017.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20,061	18,440				
기타금융자산	-	10,598	영업수익	20,839	20,80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66				
FVPL-금융자산	8,318	-				
매도가능금융자산	-	15,003	영업비용	16,655	15,593	
FVOCI-금융자산	1,223	-				
대여금및수취채권	3,583	3,253				
종속기업및관계기업	15,518	14,774	영업이익	4,184	5,213	
유형자산	216	260				
무형자산	541	570	영업외수익	3	869	
기타자산	134	142	영업외비용	2,056	154	
이연법인세자산	1,265	627		2,131		
자산총계	50,859	64,333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5,928	
기타부채	2,420	13,520	자삼선군이락			
당기법인세부채	808	540				
퇴직급여채무	898	591	법인세비용	597	1,374	
부채총계	4,126	14,651				
자본금	34,408	34,408	다기스이이	1 524	4 554	
기타불입자본	2,327	2,327	당기순이익	1,534	4,554	
기타자본구성요소	408	163		, <u>2</u> 7 7 4	4 4 0 4	
이익잉여금	9,590	12,784	기타포괄손익	△354	1,124	
자본총계	46,733	49,682	당기총포괄손익	1,180	5,678	

라. 운용자산 규모

(2019. 5. 31 현재 / 억원)

지하트기	증권						ЕШ	승성		
집합투자 기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 계
수탁고	6,888	6,883	32,837	3,643	3,193	4,280	14,131	1,077	21,988	94.92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는 업무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 등 일정사유 발생시 외국통화표 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위탁 받은 집합투자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 업자(www.hi-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



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위탁 대상투자신탁 및 범위

대상투자신탁	하이 중국본토 공모주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
어ㅁ이타버이	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업무위탁범위	주문업무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회사개요

회사명	보세라 인터내셔널(Bosera International)
	-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
업무위탁범위	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 락 처	1588-9999
ᅌᆒᄭᅿ	www.kbstar.com
홈페이지 및 연혁	1963. 2 . 1(구 국민은행)
곳 건역	2001. 11. 1(국민.주택은행 합병)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해외보관 대리인]

-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 ② 상기 ①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 ③ 상기 ① 및 ②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연 락 처	02) 2168-0400		
	회사연혁 등	2000. 6 법인설립		
(홈페이지 참조) 2008.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시	· 나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 A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주소 어로		88	금융로 6길 38	대로 70길 19	5길 29
연릭	47	1 02-399-3350	☎ 02-3215-1450	1 02-398-3900	☎ 02-721-5300
회사연	혁 등	설립일 : 2000.5.29	설립일 : 2000.6.20	설립일 : 2000.6.15	설립일 : 2011.6.9
(홈페	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 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 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 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 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

전율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 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 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 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성명(상호)	관계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 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②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블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③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 상품
	의 중개회사
	① 재무건전성
	② 정보제공정도 및 수준(운용지원 및 세미나 개최 등 포함)
	③ 결제이행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명가항목	
0,101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① 정보제공 정도 및 수준(기업분석 자료 및 운용지원)
	② 기업방문 및 NDR 협조
	③ 운용관련 세미나
	④ 요청자료 협조(운용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⑤ 결제이행 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주1)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평가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Transfer Este of Estern Estern 196 Emberson		
기업공개	주식의 대중화와 기업재무 내용의 공시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소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일반 대중에게 매출또는 모집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회사의 재산상태와 영업활동의 결과 및 주요계약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 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 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		
(집합투자기구)	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 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		
펀드코드	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		
	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		
	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